

# 국내 학술지 논문의 오픈 액세스와 아카이빙을 위한 저작권 귀속 연구

-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 학술지를 중심으로 -

## A Study on Copyright Possession for Open Access and Archiving of Scholarly Journal Paper Registered in Korean Research Foundation

홍 재 현(Jae-Hyun Hong)\*

### < 목 차 >

- |                                   |   |
|-----------------------------------|---|
| I. 서론                             | 6. 학술지 논문의 저작권 양도 동의서                         |
| II. 오픈 액세스 운동                     | 7. 학술지 논문의 저작권 귀속의 내용<br>및 단서                 |
| III. 학술지 논문의 저작권 귀속관계 분석          | IV. 학술지 논문의 오픈 액세스와 아카이빙<br>활성화를 위한 저작권 대응 방안 |
| 1. 국내 학술지 논문의 저작권 관련 분쟁           | V. 결론 및 제언                                    |
| 2. 실증 분석의 대상 및 방법                 |   |
| 3. 학술지 논문의 권리귀속 규정 유무             |   |
| 4. 학술지 논문의 권리귀속 주체 및 권리명          |   |
| 5. 학술지 논문의 디지털 복제권 및 전송권<br>귀속 관계 |   |

### 초 록

학술지는 학술 정보의 핵심매체로서, 개방과 공유를 지향하는 대표적인 비영리성 저작물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들어 학술지의 오픈 액세스 운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저작권 문제가 학술지 논문의 오픈 액세스와 아카이빙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국내 학술지 논문의 저작권 분쟁 사례를 검토하였고,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등재 학술지 906종을 대상으로 학술지 논문의 저작권 귀속 현황을 총체적으로 실증 분석하였다. 그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하여 국내 학술지 논문의 오픈 액세스와 아카이빙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키워드: 저작권 귀속, 학술지 논문, 오픈 액세스, 아카이빙, 오픈 액세스 운동

### ABSTRACT

Scholarly journal is the important media of the scholarly communication and the representative noncommercial works which aim the openness and the share of the scholarly information. Recently the concern about the open access movement of the scholarly journal is increasing in Korea. However, the copyright issues are becoming the big obstacle of the open access and the archiving of the scholarly journal paper. This study investigated the copyright dispute examples of the scholarly journal paper and analyzed the present conditions on the copyright possession of 906 scholarly journals registered in Korean Research Foundation. On the basis of the result, the paper proposed the concrete copyright plan for the open access and the archiving of the scholarly journal paper in Korea.

Keywords: Copyright Possession, Scholarly Journal Paper, Open Access, Archiving,  
Open Access Movement

\* 중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jhhong@joongbu.ac.kr)

• 접수일: 2008년 2월 23일 • 최초심사일: 2008년 2월 25일 • 최종심사일: 2008년 3월 21일

## I. 서론

국내외를 막론하고 학술정보의 핵심 매체로 유통되고 있는 것은 학술지이다. 학술정보 유통에서의 비중이 큰 만큼 학술지는 학회, 연구 집단, 도서관 사서, 출판사, 원문DB서비스업체, 자금단체 등의 학술적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주요 관심사가 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오픈 액세스 운동에 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고, 학술지 논문의 오픈 액세스 운동의 전개는 시대적 요청이기도 하다. 그러나 학술지 논문의 오픈 액세스 운동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있어서 외국의 연구자들이나 국내 연구자들이 외국 사례를 분석해 제안한 전략이나 방안을 그대로 우리의 현실에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내 학술지의 발행 및 유통 면을 살펴보면 외국과 다른 점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외국과 달리 상업 출판사가 학술지 논문의 출판 및 유통에서 주도권의 전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에서 학술지의 발행은 대부분 비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학회나 연구소 등이 주관하고 있다. 학술지 논문의 인터넷 유통과 아카이빙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나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의 정부출연기관과 상업적인 원문DB서비스업체인 한국학술정보(주)나 누리미디어가 주도하고 있다.

국내 학술지에 수록된 논문의 저작권 귀속에 관한 규정은 학술지의 논문투고규정이나 편집규정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 학술지 논문의 저작권 귀속 관계가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투고된 논문에 대해 학회가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묵시적인 관행이 된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저작권 귀속 규정에 대한 존재뿐만 아니라 저작권 귀속의 개념이나 그것이 자신의 논문의 권리에 향후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거의 모르는 상태에서 자신의 연구 성과를 발표하기 위하여 학회에 논문을 투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저작권 문제는 최근에 와서야 핫 이슈로 대두되었기 때문에 학술지 발행에 관여하는 담당자들조차 학술지 논문의 저작권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갖춘 사람들이 많지 않다. 때문에 학술지의 논문투고규정이나 편집규정에 관여하고 있는 상당수의 편집진들은 그 내용을 막연하게 규정하거나 저작권 귀속에 관한 규정 없이 학술지 논문을 발행하고 있다. 또한 많은 학회들은 학회 자체의 홈페이지 구축과 운영에 따르는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이용자의 원활한 정보이용을 도모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논문을 쓴 개별 저작권자와의 정확한 권리 양도나 적법한 계약 없이 디지털원문 유통업체와 이용계약을 맺고 학회 홈페이지나 인터넷에 유통시키고 있다. 그런데 인터넷 환경에서 학술지 논문의 저작권 귀속 주체와 디지털 복제권이나 전송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에 대한 귀속관계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거나 그 권리 귀속 규정에서 저자 셀프 아카이빙이나 기관 리포지토리를 허용하는 공유와 개방이라는 개념이 유연하게 수용되지 못할 때, 오픈 액세스 운동의 활성화는 탄력을 받기가 어렵다.

그리고 실제로 학술지 논문의 권리 귀속 처리가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못한 상황에서 학술논문의 디지털원문서비스업체인 한국학술정보(주) 및 누리미디어와 저작권 신탁기관인 사단법인 한국

복사전송권관리센터 간에 법적 갈등으로 저작권 분쟁 조정 신청 및 민형사상의 소송 사건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국내 학술지 논문의 오픈 액세스와 아카이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실제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저작권 문제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먼저 오픈 액세스 운동의 개념과 국내에서 발생한 학술지 논문의 저작권 분쟁 사례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어 본격적으로 학술지 논문의 저작권 귀속에 대한 정확한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하여 학술지 논문의 권리 귀속 규정 유무, 학술지 논문의 권리 주체와 학술지 논문의 권리 귀속을 규정하는 권리명, 학술지 논문의 디지털 복제권 및 전송권의 귀속 관계, 학술지 논문의 저작권 양도 동의서, 학술지 논문의 저작권 귀속의 구체적인 내용 및 단서 등에 대한 총체적 범위의 상세한 실증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최근 국내에서도 학술정보의 오픈 액세스 운동에 관한 연구 논문들이 다수 발표되었다. 그 가운데 본 연구에 기초적인 지식을 제공한 것으로는 윤희운·이재민(2006)과 윤희운·김신영(2007)이 수행한 연구 논문을 들 수 있다. 먼저 윤희운·이재민(2006)은 저작권 문제를 오픈 액세스 운동의 최대 부담 요소로 인식하였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이하 “학진”이라 한다)에 등록된 학회 가운데 그 수가 200개 이상인 분야(인문학, 사회과학, 공학, 의약학)에서 각각 10%를 무작위 추출하여 국내 학회지 논문의 저작권 귀속현황을 분석하였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sup>1)</sup> 또한 윤희운·김신영(2007)은 오픈 액세스 학술지의 현황과 국내외 문헌정보학 학술지의 오픈 액세스 동향을 분석하였다. 그렇지만 전자의 경우는 학진에 등록된 학회지의 일부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그 논문의 저작권 귀속 주체 현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후자의 경우는 국내 오픈 액세스 운동의 지향성을 제시하였지만,<sup>2)</sup> 저작권 권리귀속을 주 연구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었다.

한편 학술지에 수록된 논문들은 개방과 공유를 지향하는 대표적인 비영리성의 저작물이라는 점과 이 학술논문을 작성하는 연구자와 이용자의 진정한 요구와 입장도 정확하게 알아 둘 필요가 있다.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대부분의 연구자(저자)들은 자신의 논문이 널리 공개되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글을 읽어 주거나 인용함으로써 다른 연구자들로부터 학술적으로 좋은 평판과 존경을 받기 원한다. 인터넷 환경에서의 이용자들은 누구나 학술논문의 디지털 원문에 자유롭게 접근해서 학술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기를 원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학술지의 논문의 저작권 분쟁 사례에 대한 문헌 분석과 저작권 귀속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하면서,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연구자와 정보 이용자의 시대적 요청을 함께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실정에 적합한 학술지 논문의 오픈 액세스와 아카이빙의 활성화를 위한

1) 윤희운, 이재민. “국내 학회지 논문의 저작권 귀속현황과 개선방안.” 정보관리연구, 제37권, 제1호(2006. 3), pp.17-37.

2) 윤희운, 김신영. “국내의 문헌정보학 학술지의 오픈 액세스 동향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8권, 제1호(2007. 3), pp.257-276.

저작권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 II. 오픈 액세스 운동

외국의 경우 대부분의 학술지는 출판사가 가격 및 유통의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다. 그로 인해 발생하는 학술지의 지나친 상업화, 출판사의 독점, 급등하는 학술지의 가격, 라이선싱 기반의 제한적인 정보이용 및 아카이빙, 출판사의 저작권의 남용, 복잡한 심사과정, 출판 지연 등은 도서관계와 연구 집단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그러자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학술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하는 논의가 시작되었다. 모든 이용자들에게 학술지 및 학술논문을 개방하고, 가격 및 접근에 대한 장벽을 제거하며 학술정보의 아카이빙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으로 오픈 액세스 운동(open access movement)이 등장하게 되었다.

학술정보유통시스템의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시도로서 등장한 오픈 액세스 운동은 모든 학술적 문헌을 인터넷을 통해 디지털 형태로 전 세계의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지지하는 운동이라 할 수 있다.

오픈 액세스 운동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은 크게 구독료 기반의 저널들을 대체하기 위한 대안으로 '오픈 액세스 저널(Open Access Journal)'과 '셀프 아카이빙(Shelf Archiving)'으로 구분된다.

'오픈 액세스 저널'은 무료로 이용 가능한 전자저널로서, 질적으로 통제된 논문을 독자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며 접근에 대한 비용을 독자나 독자의 소속 기관에 부담시키지 않는 것이 큰 특징이다.<sup>3)</sup> 대신에 오픈 액세스 저널의 출판비용은 저자(연구자)가 부담하거나 연구를 지원하는 기금단체와 대학, 연구자들을 고용하는 대학과 연구소, 학문주제별 또는 기관별로 마련된 기금, 오픈 액세스의 취지에 동의하는 동료들, 구독비용이 부과되었던 저널의 구독취소로 자유로워진 기금 등을 통해서도 충당될 수 있다.<sup>4)</sup> 그렇지만 모든 연구자나 연구자들을 고용하는 대학과 연구소 등이 출판 비용 부과에 응하는 것이 아니므로 출판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여기에서 사용되는 용어인 오픈 액세스의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2년에 발표된 부다페스트(Budapest) 오픈 액세스 선언에서는 오픈 액세스를 "저자들이 재정적, 법률적, 기술적 장벽 없이 인터넷을 통해 학술논문의 원문을 누구나 무료로 접근하여 읽고, 다운로드하고, 복제하고, 배포하고, 인쇄하고, 탐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sup>5)</sup>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2003년에 발표된 오픈

3) Ana Maria Ramalho Correia and José Carlos Teixeira, "Reforming scholarly publishing and knowledge communication: From the advent of the scholarly journal to the challenges of open access," *Online Information Review*, Vol.29, No.4(2005), p.358.

4) 최재황, 조현양, "오픈 액세스 운동의 동향과 학술적 이해관계자의 대응전략," *정보관리학회지*, 제22권, 제2호(2005, 6), pp.308-309.

액세스에 관한 베테스다(Bethesda) 선언에서는 오픈 액세스를 “저자와 저작권자들이 전 세계의 모든 이용자에게 저작물을 무료로 접근할 수 있게 하며, 복제하고, 이용하고, 배포하고, 전송할 수 있으며,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고 배포할 수 있게 하는 것”<sup>6)</sup>이라고 그 개념을 더욱 확장하고 있다.

또 하나의 오픈 액세스 운동의 실천 전략인 셀프 아카이빙은 영구적 이용을 위해 지식저장소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서, 저자 셀프 아카이빙(Author Self Archiving)과 주제별 리포지터리(Disciplinary Repository) 또는 기관 리포지터리(Institutional Repository)로 세분된다. 저자 셀프 아카이빙은 저자들이 자발적으로 프리프린트(preprint) 또는 포스트프린트(postprint)를 자신의 웹사이트에 직접 아카이빙 하여 디지털 형태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전략이다. 주제별 리포지터리나 기관별 리포지터리는 학술논문의 주제범위 또는 운영하는 기관단위로 지식정보저장소를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현재 오픈 액세스 운동은 확산되고 있고 이를 수용한 사례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 Ⅲ. 학술지 논문의 저작권 귀속관계 분석

#### 1. 국내 학술지 논문의 저작권 관련 분쟁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술지 논문의 저작권 귀속문제로 디지털원문 유통업체인 한국학술정보(주)와 누리미디어를 상대로 저작권신탁단체인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가 제기한 법적 분쟁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이 분쟁은 학술지 논문의 원저작권자의 권리 귀속문제가 쟁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에 한국학술정보(주)와 누리미디어의 학술지 논문 서비스와 관련해서 발생한 법적 분쟁사례를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한국학술정보(주)와 누리미디어가 제공하고 있는 학술지 논문서비스와 계약관계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학술정보(주)는 현재 국내 1,200여개의 학회 및 연구소가 발행하는 2500종의 학회지 및 연구간행물을 창간호에서 최근호까지 DB로 구축하여 국내외 800여개의 대학, 정부기관, 공공도서관, 연구소, 기업에 학술지 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sup>7)</sup> 누리미디어는 2007년 1월 현재 11개 분야의 434개 학회, 연구소, 출판사에서 발행하는 854종의 간행물의 논문을 DB로 구축하여 300여개의 국내 주요 대학 및 연구소에 서비스하고 있다.<sup>8)</sup>

5) Budapest Open Access Initiative, <<http://www.soros.org/openaccess>> [cited 2007. 11. 20].

6) Bethesda Statement on Open Access Publishing, Released June 20, 2003.  
<<http://www.earlham.edu/~peters/fos/bethesda.htm>> [cited 2007. 11. 20.].

7) 한국학술정보(주), <<http://www.kstudy.com>> [cited 2007. 12. 1.].

8) DBPIA, <<http://www.dbpia.com>> [cited 2007. 12. 1.].

한국학술정보(주)와 누리미디어는 학회 및 연구소와 '전송권 계약', '전자출판권설정계약' 등을 체결하고, 각 학회지 또는 간행물에 실린 논문을 디지털화 해서 원문DB를 구축한 후 연구기관, 대학, 연구소, 기업, 행정부처 등과 유료의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취해 본 기관이나 이용 계약 단체에서 학술지 논문의 원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학술정보(주)와 누리미디어는 학회로부터 전송권 계약, 전자출판권설정계약을 받고 그 사용대가로 판매가의 일정 비율을 학회에 지급하고 있다.

#### 가. 센터와 한국학술정보(주) 간의 분쟁

이는 학회에 게재된 학회지 논문이 DB사업자에 의하여 2차적 저작물로 작성되어 유상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센터가 한국학술정보(주)를 대상으로 2006년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 저작권 분쟁 조정을 신청한 것을 말한다.

센터는 민간업체인 한국학술정보가 개별 저작권자 모두로부터 별도의 이용허락동의서를 받지 않은 학회와 전송권 계약을 맺고 서비스하고 있는 DB와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 또는 준회원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DB는 모두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이며 원저작권자에게 저작권료를 분배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시정해 달라는 것이었다. 한편 2006년 12월 개정된 저작권법에 신설된 비친고죄 조항(저작권법 제140조<sup>9)</sup>)이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할 경우 개별 저작권자의 고소가 없이도 형사 처벌하는 것과 또한 문화관광부장관이 복제물의 전송 서비스의 중단을 명하는 것(저작권법 제133조<sup>10)</sup>)이 가능하게 되었다.

9) 저작권법 제140조(고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제136조 제1항 및 제136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제136조 제2항 제2호, 제5호 및 제6호, 제137조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와 제138조 제5호의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제136조 제2항 제4호의 행위를 한 경우

10) 저작권법 제133조(불법 복제물의 수거·폐기 및 삭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문화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복제물은 제외한다) 또는 저작물 등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기 위하여 제작된 기기, 장치 및 프로그램을 발견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하여 폐기하게 할 수 있다.
-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종사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본다.
- ③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 등이 수거·폐기를 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관련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문화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의 전송 등으로 인하여 저작권등의 이용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2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복제, 전송자 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이를 삭제 또는 중단하도록 명할 수 있다.
- ⑤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⑥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이 다른 법률 규정과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이러한 변화에 한국학술정보는 종전에 해 왔던 대로의 DB 구축 및 공급에 불안감을 갖게 되었다. 결국 한국학술정보는 2007년 4월까지 센터와의 수차례의 조정 과정의 협의를 거쳐 센터가 제시한 ‘저작권신탁과 이용허락’이라는 제도를 도입하여 관련사항에 합의하게 되었다. 센터와 한국학술정보와의 저작물 이용허락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sup>11)</sup>

- ① 학술정보와 학회가 체결한 계약사항을 센터가 승계. 한국학술정보와 학회 간 체결한 계약내용은 변경 없이 센터가 승계하고, 현재와 동일한 서비스를 계속한다.
- ② 투명한 분배정산을 위한 공동 노력. 한국학술정보는 판매내역 및 판매금액 등의 이용내역을 센터에 제출하고, 센터는 투명한 정산시스템을 구축하고 6월말과 12월말 일을 기준으로 연2회에 걸쳐 학회와 저작권자에게 정산 분배한다.
- ③ 학술저작물에 대한 사용료 요율. 학회와 논문저자 간 이용동의서가 작성된 논문의 경우 판매금의 25%를 학회에 분배하고, 이용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논문인 경우에는 15%를 학회에 그리고 10%를 개별저작권자에게 별도로 분배한다.

이와 같이 한국학술정보와 센터 간에 ‘저작권신탁과 이용허락’이라는 내용으로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센터는 개정저작권법의 신설된 조항과 학술저작물 권리관계를 설명하고 신탁안대를 요청하기 위하여 한국학술정보가 계약 체결한 1200여개 학회에 ‘개정 저작권법 시행 안내 및 저작물 신탁의뢰 요청’이라는 공문(2007년 4월)을 발송하였다. 또한 한국학술정보도 학회에 저작물 신탁을 요청하기 위하여 계약관계에 있는 학회에 ‘개정 저작권법 시행에 따른 DB사업 방법 변경을 위한 협조 요청’ 공문(2007년 4월)을 발송하는 등 협조를 구하는 절차를 취하고 있다.

일단 두 기관간의 갈등은 겉으로는 조정에 의해 봉합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일체의 저작권을 학회가 양도받지 않은 경우 센터가 그 학회에 논문을 발표하는 개별 원저작권자들로부터 일일이 복사권과 전송권을 신탁 받아 한국학술정보에 이용허락하고 한국학술정보가 개별 저자의 논문을 유통시키도록 할 수 있겠는가와, 학술지의 논문의 개별저작권자에 대한 저작권료 정산 및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하는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 나. 센터와 누리미디어간의 분쟁

센터와 누리미디어간의 분쟁은 한국학술정보의 경우와 달리 조정의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민·형사상의 소송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 진행과정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센터는 2006년 5월 신탁관리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득한 이후 서비스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조정 신청을 저작권 심의조정위원회에 하였으나, 누리미디어에서 센터가 신탁을 득한 해당저작물에 대한 서비스를 중지

11)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 학술저작물 권리보호를 위한 센터 업무 현황.  
 <<http://www.copycle.or.kr>> [cited. 2007. 12. 3].

함으로써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

그 후 센터는 누리미디어를 상대로 2007년 2월 센터가 9명의 원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을 신탁 받은 저작물에 관한 '전송권 침해정지를 청구하는 이용중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민사고소와 형사고소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 민사고소 사건에 관하여 법원은 2007년 4월 24일자로 '학술저작물 서비스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판결하였다. 법원이 가처분의 신청을 기각한 판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sup>12)</sup>

- 피신청인(누리미디어)은 원저작권자들이 소속된 학회 등과 사이에 이 사건 저작물에 관하여 직접 또는 교보문고를 통하여 전자출판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전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통상 원저작권자가 자신이 소속된 학회 등이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학회지 또는 간행물에 저작물을 게재하는 경우 관례상 관련 저작권을 학회 등에게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아날로그 및 무상제공방식을 예정한 것이지, 디지털화된 2차적 저작물이나 유상제공방식까지 포함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소명사실만으로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저작물에 관한 전송권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증거가 없다는 점.
- 신청인이 디지털 데이터 방식의 전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피신청인과 같은 업체에게 전자출판권을 설정해 주고 그 사용대가를 지급받는 방법을 택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 이 사건 전송서비스가 유료이기는 하지만 그 사용료의 성격은 내용에 대한 대가라기보다는 중개료(손수 도서관 정기간행물에 가서 직접 복사 등을 통하여 구하는 것을 대신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보이는 점.
- 이 사건 전송서비스로 인하여 침해받는 신청인의 권리는 저작재산권이므로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금전지급을 구하는 본안소송 및 그 본안소송을 위한 보전처분을 통하여 전보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 이 사건 전송서비스가 제공되는 것 자체만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만한 소명자료가 없는 점 등의 제반사항을 고려할 때, 가처분으로써 이 사건 서비스의 제공을 금지시킬 만큼 보전의 필요성이 고도로 소명되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센터는 이에 불복하고 2007년 5월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하였다.<sup>13)</sup> 본 항고심은 현재 진행 중이며, 형사소송 또한 진행 중이다. 민사상의 항고심이나 형사소송에 대하여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는지 지켜 볼 일이다.

이렇듯 민·형사상의 고소가 진행되는 가운데 누리미디어는 센터가 학회에 요구하고 있는 학회 간행물의 복사권과 전송권의 신탁에 신중한 판단을 내려 줄 것을 권유하는 공문<sup>14)</sup>을 학회에 보냈고, 누리미디어 공문에 대해 센터측도 해당기관의 의견을 안내 공문<sup>15)</sup>으로 학회에 보내는 등 쌍방간에 참여한 이해관계의 대립을 보이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sup>16)</sup>

12)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 2007. 4. 24. 2007카합312 학술저작물서비스금지가처분 결정  
 13)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07라 872 학술저작물서비스가처분  
 14) NURI 2007-175, 2007. 5. 14. 제목: 한국학술정보,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 공문에 대한 참고 의견  
 15) 복사전송2007-157. 2007. 5. 23. 제목: 누리미디어 공문에 대한 저작권신탁단체 등의 의견  
 16)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 *op. cit.*, [cited 2007. 12. 3.]



① 학회 발행 간행물의 복사권과 전송권에 대한 신탁

누리미디어는 공문에서 학회가 센터에 학회 발행 간행물의 복사권과 전송권에 대한 신탁을 하게 되면 학회는 복사권과 전송권에 관한 한 무권리자가 됨으로써, 학회가 차후에 복사권과 전송권에 대한 정당한 권리계약을 맺고자 해도 권리 주체로서의 법률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센터측은 신탁에 의하여 각 학회는 신탁자로서 지위를 갖게 되므로 수익을 분배받는 것이며, 권리 행사를 계속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자인 센터를 통하여 현재와 동일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한편 저작권 분야에서 통상 신탁은 다음의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신탁자와 수탁자간에 어떤 권리에 관하여 신탁계약이 체결되면 그 권리는 법률상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하여 수탁자가 권리자가 되고, 그 권리에 대하여 소제기의 권리를 포함한 모든 권리 처분권이 수탁자에게 속하게 된다.<sup>17)</sup> 따라서 저작권신탁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침해정지청구나 손해배상청구의 소송도 신탁관리업자가 제기하게 된다.<sup>18)</sup>”

② 개별 논문에 대한 저작권이양동의서 확보

누리미디어는 센터에 저작권 신탁을 하는 것으로 저작권 문제가 원천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므로, 궁극적으로 저작권 해결을 위해서는 학회에서 개별 논문에 대하여 해당 저자로부터 저작권이양동의서를 받아 둘 것을 권고하고, 참조용으로 저작권이양동의서 양식을 소개하고 있다. 단, 이 내용은 본 논문 3장의 학술지 논문의 저작권 귀속 단서 부분에서 후술하기로 한다.

③ 저작권이양동의서를 받기 이전의 논문에 대한 공동 활용의 근거 마련

누리미디어는 저작권 이양 동의서를 받기 이전의 논문에 대해서는 저작권 규정에 “학회지 또는 논문지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향후 게재되는 논문의 저작권은 학회에 귀속되며, 원고의 투고로서 논문의 저작권을 학회에 이양하는 것으로 본다. 또한 종전에 발행된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해 학회가 이미 관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규정을 보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센터는 저작권은 저작자 개인에게 귀속되는 권리로서 저작권의 양도는 저작자의 보호차원에서 엄격하게 인정하고 있고, 학회나 발행기관이 저작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상기와 같은 문구를 규정하는 것만으로는 저작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피력하고 있다.

④ 센터의 학술저작물서비스금지가처분 신청의 기각사실에 대한 안내

누리미디어는 “센터가 누리미디어가 서비스 중인 학술저작물 중 일부에 대해서 학술저작물서비

17) 서울고등법원, 1996. 7. 12. 선고 95나41279 판결

18) 오승중, 이해인, 저작권법, 제4판(서울 : 박영사, 2007), p.473. ; 정상조, 지적재산권법(서울 : 홍문사, 2004), p.410.

스금지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기했지만,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기각했으므로 이 점을 참고하도록 공지하고 가처분신청기각결정문 표지와 요약내용을 첨부파일로 보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하여 센터는 “마치 누리미디어의 학회지 서비스 금지가처분 신청 기각이 현재의 학술저작물 서비스가 적법하였다고 관시한 것처럼 안내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와 다르며 가처분이 가져야 할 보전의 필요성에 대하여 소명자료가 부족하다고 한 결정으로 적어도 무단 사용하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불법사용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이견을 나타내고 있다.

이상에서 양측의 엇갈린 입장과 견해를 살펴 본 바 센터와 누리미디어는 모두 자기 나름의 논리와 타당성이 있다고 주장하겠지만,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개별 원저작권자인 연구자와 학회 편집진의 다양한 의견을 고려하고 있는가와 학술커뮤니케이션의 화두로 부상하고 있는 오픈 액세스 운동의 정신을 반영하려는 발상과 노력을 하고 있는 가를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2. 실증 분석의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2007년 7월을 기준으로 학진에 등록된 등재학술지 906종 전체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게재된 학술논문의 저작권 귀속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방법은 학진에서 발표한 등재 학술지 목록을 근거로 하여 각 학회의 홈페이지를 2007년 7월에서 8월에 걸친 2개월 동안 일일이 서핑하여 각 관련 규정의 내용을 수집하여 분석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간혹 홈페이지의 주소가 변경되거나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이 충실하게 나타나 있지 않은 경우에는 내용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관련 학회의 편집진에 전화를 걸어 문의하였으며, 담당자로부터 관련 데이터를 E-mail로 받았다.

본 연구가 학진에 등록된 학술지 가운데 등재지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학진에 등록된 등재지는 그 학술성이 인정된 학술지로서 국내 연구자들에게서 가장 많이 유통되는 학술지이고, 등재후보지보다 수적으로 약 2배 정도 많으며,<sup>19)</sup> 논문투고규정이나 편집규정을 여러 번 개정한 바 있어 그 내용의 보완 및 완성도가 등재후보지 보다 높을 것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 및 유럽과 달리 우리나라는 상업적인 전문 출판사를 통해 발행·유통되는 학술지가 매우 적다는 점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학진에 등재된 학술지는 아래의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 분야의 학술지가 279종(30.8%)으로 가장 많았고, 인문 분야 233종(25.7%), 공학 분야 124종(13.7%), 의약학 분야 86종(9.5%)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복합 분야의 학술지는 15종(1.7%)으로 가장 낮은 비율로 나타났고, 예술 체육 분야와 농수해 분야의 학술지도 수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19) 본 연구가 분석을 시도한 현 시점(2007. 8.)에서 학진에서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등재지는 총 906종이고, 등재후보지는 총533종이다.

본 연구는 각 학회가 발행하는 등재 학술지를 대상으로 저작권 귀속에 대한 실증분석에 적용할 기준 항목을 설정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1> 분야별 등재 학술지 현황

주제 분야	빈도	백분율(%)
인 문	233	25.7
사 회	279	30.8
자 연	75	8.3
공 학	124	13.7
의 약 학	86	9.5
농 수 해	55	6.1
예술 체육	39	4.3
복 합	15	1.7
계	906	100.0

<표 2> 등재 학술지 논문의 저작권 귀속 조사를 위한 기준 항목

구 분	세부 조사 내용
학술지 논문의 권리 귀속 규정 유무	학술지 논문의 권리 귀속 규정 유무 현황
학술지 논문의 권리 귀속주체 및 권리명	학술지논문의 권리 귀속 주체의 유형
	학술지논문의 권리 귀속 권리명의 유형
학술지 논문의 디지털 복제권 및 전송권 귀속 관계	학술지 논문의 디지털 복제권 및 전송권 귀속 처리
학술지 논문의 저작권 양도 동의서	학술지 논문의 저작권 양도 동의서의 다양한 명칭
	학술지 논문의 저작권 양도 동의서의 유무 현황
학술지 논문의 저작권 귀속의 내용 및 단서	학술지 논문의 저작권 귀속 단서 유무 현황
	학술지 논문의 저작권 귀속의 구체적 내용 및 단서

### 3. 학술지 논문의 권리귀속 규정 유무

일반적으로 학술지 논문의 권리귀속 관계는 통상 편집규정, 편집·출판규정, 논문투고규정, 투고와 심사에 관한 규정, 편집방침, 논문투고요강, 논문기고요령, 발간규정, 간행물발간규정, 발행규정, 투고안내 등의 명칭으로 불리어지는 자체규정을 통해 그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 관행이다. 이러한 명칭 가운데서 논문투고규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본 분석은 먼저 논문투고규정 내에 학술지 논문의 권리 귀속을 명시한 규정이 얼마나 존재하고 있는지부터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학술지 논문의 권리귀속 규정 유무 현황

구 분	권리귀속 규정함	권리귀속 규정하지 않음	계
인 문	40(17.8%)	193(82.2%)	233(100.0%)
사 회	79(28.3%)	200(71.7%)	279(100.0%)
자 연	42(56.0%)	33(44.0%)	75(100.0%)
공 학	52(41.9%)	72(58.1%)	124(100.0%)
의 약 학	62(72.1%)	24(27.9%)	86(100.0%)
농 수 해	20(36.4%)	35(63.6%)	55(100.0%)
예술체육	9(23.1%)	30(76.9%)	39(100.0%)
복 합	2(13.3%)	13(86.7%)	15(100.0%)
계	306(33.8%)	600(66.2%)	906(100.0%)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전체 조사대상 학술지 906종 가운데 전체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66.2%의 학술지는 학술 논문의 적법한 권리 행사에 필요한 권리귀속의 명시적인 규정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 이는 가히 충격적이다.

학술지에 수록된 논문의 권리귀속관계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비율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복합 분야가 86.7%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이어 인문 분야가 82.2%, 예술체육 분야 76.9%, 사회 분야 71.7%, 농수해 분야 63.6%, 공학 분야 58.1%로 나타났다. 다만, 의약학 분야의 경우 72.1%의 학술지 그리고 자연분야의 56%의 학술지만이 권리귀속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4. 학술지 논문의 권리귀속 주체 및 권리명

##### 가. 학술지 논문의 ‘권리 귀속 주체’

학술논문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sup>20)</sup>에 해당하므로 저작권 보호대상이 되기 위한 저작물성을 충족시킨다. 저작물의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므로,<sup>21)</sup> 저자가 투고한 학술논문의 저작권은 저자가 학술논문을 저술한 순간 자동적으로 발생한다. 학술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바로 그 논문을 작성하는데 지적 노력을 한 저자가 가지게 된다.<sup>22)</sup>

학술논문을 저술한 저자가 가지는 저작권은 크게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구분된다. 그 가운데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권리이며 복제권, 전송권, 배포권, 번역권, 2차적

20)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의 1).

21) 저작권법 제10조 제2항.

22)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의 2).

저작물 작성권 등의 지분권으로 나뉜다. 즉 저작권은 저작물의 이용방식에 따라 다양한 권리를 가지게 되며, 이와 같은 다수의 권리 묶음을 일컬어 저작권이라 통칭한다. 그러므로 학술논문의 저자가 자신의 저작권을 포기한다고 천명하지 않는 한, 학술지에 게재된 학술논문에 대한 저작권 전부, 복제권(디지털 복제 포함)이나 전송권과 같은 지분권의 다발이나 특정한 지분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이용허락을 할 수 있는 권리(들)는 응당 그 논문을 저술한 저자의 권리라는 점이다. 이점을 우리는 정확히 인지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앞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학술논문의 저작권 주체를 명시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설사 저작권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할지라도 학술논문의 저작권 귀속관계가 불분명하게 규정된 경우 또한 적지 않다.

이에 본 연구자는 실제로 등재 학술지들이 권리 귀속 주체를 어떻게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총 906종의 학술지에 수록된 논문의 권리 귀속 주체의 유형을 9가지로 범주화하였다. 그 9가지 유형은 학회, 연구소, 저자, 학회와 저자 공유, 학회와 저자(저작권)/학회(전송권), 저자(저작권)/학회(편집저작권), 저자(저작권)/학회(편집저작권과 판권), 기타, 권리 주체 명기하지 않음이다. 이처럼 권리 귀속 주체를 세분한 이유는 학술지에 따라 전송권, 편집저작권 등과 같은 지분권의 귀속 주체를 포괄적인 권리 귀속주체와 구분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존재하고 있어, 이를 본 분석에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함이다. 이 기준에 입각하여 분야별 등재 학술지 논문의 권리 귀속주체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4>와 같다.

학술지 논문의 권리 귀속주체를 상기의 유형별로 세분하여 조사한 결과, '학회'가 게재된 논문에 대한 권리주체로 규정된 경우는 전체 가운데 28.8%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 가운데 분야별로는 의약학 분야가 72.1%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연구소가 권리 주체가 되는 경우는 전체 가운데 1.3%에 불과하였다. 학회와 연구소가 논문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게끔 규정한 경우는 30.1%에 해당한다.

한편 학술 논문을 작성한 '저자'가 자신의 논문에 대해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주체가 됨을 명기하고 있는 경우는 총 6종으로서 전체의 0.7%라는 매우 낮은 비율을 보였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인문 분야 「비평과이론」, 「영미문학페미니즘」, 사회 분야 「성균관법학」, 「상사법연구」, 자연분야 「대한원격탐사학회지」, 농수해 분야 「Journal of Plant Biotechnology」 학술지의 경우에만 저자가 권리 주체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었다. 반면에 공학 분야, 의약학 분야, 예술체육 분야, 복합 분야의 경우에는 저자에게 권리를 귀속한 학술지가 아예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회와 저자가 공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학술지는 총 11종으로서 전체의 1.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문분야의 경우 「영어영문학연구」, 「일어일문학」, 「일본어문학」, 「스페인어문학」, 「영어어문교육」, 「Foreign Language Education」, 「일본어문학」, 「일본학보」, 사회 분야의 경우 「열린유아교육연구」, 「유아교육연구」 학술지는 학회와 저자가 저작권을 공유하는 방식을 취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자연 분야, 공학 분야, 의약학 분야, 예술체육 분야, 복합 분야의 경우 학회와 저자가 공유하도록 하는 학술지는 전혀 없었다.

‘학회와 저자’가 저작권을 갖되, 저작권의 지분권의 하나인 전송권이 ‘학회’에 귀속되도록 이를 세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전체의 0.2%로 나타났다.

‘저자’가 저작권을 갖되, 편집저작권을 ‘학회’에 귀속시키는 경우는 공학 분야에서 있었고, 그 비율은 전체의 0.3%로 나타났다. ‘저자’가 저작권을 갖되, 편집저작권과 판권을 ‘학회’에 귀속시키는 경우도 공학 분야에서만 있었고, 그 비율은 전체의 0.3%로 나타났다.

끝으로 ‘기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전체의 0.9%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예술체육 분야에 해당하는 3종의 학술지는 저작권은 저자에게 편집출판권은 학회에 귀속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한편 문헌정보학 분야의 경우 총 5종<sup>23)</sup>의 학술지가 등재지이지만, 그 가운데 「한국비블리아학회지」와 「정보관리학회지」만이 ‘학회’가 귀속주체임을 규정하고 있었다.

〈표 4〉 학술지 논문의 권리귀속 주체 현황

학문 분야	학회	연구소	저자	학회와 저자 공유	학회와 저자 (저작권), 학회 (전송권)	저자 (저작권)와 학회(편집 저작권)	저자 (저작권)와 학회(편집 저작권과 판권)	기타	규정하지 않음	계
인 문	27 (11.6%)	3 (1.3%)	2 (.9%)	8 (3.4%)	0 (.0%)	0 (.0%)	0 (.0%)	0 (.0%)	193 (82.8%)	233 (100.0%)
사 회	64 (22.9%)	8 (2.9%)	2 (.7%)	2 (.7%)	2 (.7%)	0 (.0%)	0 (.0%)	1 (.4%)	200 (71.7%)	279 (100.0%)
자 연	41 (54.7%)	0 (.0%)	1 (1.3%)	0 (.0%)	0 (.0%)	0 (.0%)	0 (.0%)	0 (.0%)	33 (44.0%)	75 (100.0%)
공 학	43 (34.7%)	0 (.0%)	0 (.0%)	0 (.0%)	0 (.0%)	3 (2.4%)	3 (2.4%)	3 (2.4%)	72 (58.1%)	124 (100.0%)
의약학	62 (72.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4 (27.9%)	86 (100.0%)
농수해	18 (32.7%)	1 (1.8%)	1 (1.8%)	0 (.0%)	0 (.0%)	0 (.0%)	0 (.0%)	0 (.0%)	35 (63.6%)	55 (100.0%)
예 술 체 육	6 (15.4%)	0 (.0%)	0 (.0%)	0 (.0%)	0 (.0%)	0 (.0%)	0 (.0%)	3 (7.7%)	30 (76.9%)	39 (100.0%)
복 합	1 (6.7%)	1 (6.7%)	0 (.0%)	0 (.0%)	0 (.0%)	0 (.0%)	0 (.0%)	0 (.0%)	13 (86.7%)	15 (100.0%)
계	261 (28.8%)	12 (1.3%)	6 (.7%)	11 (1.2)	2 (.2%)	3 (.3%)	3 (.3%)	8 (.9%)	600 (66.2%)	906 (100.0%)

23) 2007년 학진이 발표한 문헌정보학 분야 등재지로는 인문분야의 「서지학연구」, 사회 분야의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한국문헌정보학회지」,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정보관리학회지」이다.

나. 학술 논문의 권리 귀속 권리명의 다양한 명칭

학술지의 논문에 대해 적용되는 권리의 명칭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만약 이러한 권리명이 혼용되거나 정확하게 사용되지 않을 경우 적절한 권리 행사를 하는데 제한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저작권과 그 지분권인 디지털 복제권, 전송권(2006년 개정 저작권법에서 ‘공중송신권’<sup>24)</sup>으로 권리 명칭이 변경됨, 저작권법 제18조) 등의 귀속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 오픈 액세스 운동의 전개도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될 수 있다.

이에 등재 학술지 전체를 대상으로 권리귀속을 규정하는 다양한 권리명칭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판권, 지적소유권, 저작권, 저작권과 전송권, 저작권과 편집저작권, 저작권과 편집저작권 및 판권, 기타, 권리 명칭 규정하지 않음이라는 8개의 유형으로 권리 명칭을 범주화 할 수 있었다. 이 8가지 유형으로 범주화하여 분야별 등재 학술지의 권리명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의 <표 5>와 같다.

<표 5> 학술지 논문의 권리 귀속에 대한 다양한 권리명칭의 유형

구분	판권	지적 소유권	저작권	저작권과 전송권	저작권과 편집저작권	저작권과 편집저작권 및 판권	기타	규정하지 않음	계
인 문	2 (.9%)	2 (.9%)	34 (14.6%)	0 (.0%)	0 (.0%)	0 (.0%)	2* (.9%)	193 (82.8%)	233 (100.0%)
사 회	39 (14.0%)	1 (.4%)	28 (10.0%)	4 (1.4%)	0 (.0%)	0 (.0%)	7 (2.5%)	200 (71.7%)	279 (100.0%)
자 연	5 (6.7%)	0 (.0%)	37 (49.3%)	0 (.0%)	0 (.0%)	0 (.0%)	0 (.0%)	33 (44.0%)	75 (100.0%)
공 학	10 (8.1%)	2 (1.6%)	33 (26.6%)	0 (.0%)	3 (2.4%)	3 (2.4%)	1 (.8%)	72 (58.1%)	124 (100.0%)
의약학	0 (.0%)	0 (.0%)	58 (67.4%)	0 (.0%)	0 (.0%)	0 (.0%)	4 (4.7%)	24 (27.9%)	86 (100.0%)
농수해	3 (5.5%)	2 (3.6%)	14 (25.5%)	0 (.0%)	0 (.0%)	0 (.0%)	1 (1.8%)	35 (63.6%)	55 (100.0%)
예 술 체 육	2 (5.1%)	0 (.0%)	4 (10.3%)	0 (.0%)	0 (.0%)	0 (.0%)	3 (7.7%)	30 (76.9%)	39 (100.0%)
복 합	0 (.0%)	0 (.0%)	2 (13.3%)	0 (.0%)	0 (.0%)	0 (.0%)	0 (.0%)	13 (86.7%)	15 (100.0%)
계	61 (6.7%)	7 (.8%)	210 (23.2%)	4 (.4%)	3 (.3%)	3 (.3%)	18 (2.0%)	600 (66.2%)	906 (100.0%)

본 분석 결과, 학술지 논문의 권리 보호 명칭으로는 저작권이라는 용어가 23.2%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었으며, 판권 6.7%, 기타 2.0%, 지적소유권 0.8%의 비율을 보였다. 특히 별도의 지분

24) 공중송신권은 저작자가 그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말한다. 공중송신은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등”이라 한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의 7).

권에 대한 권리 귀속을 따로 명기한 경우들은 이보다 훨씬 낮은 비율을 나타냈다.

여기에서 사용되는 각 권리의 개념에 대해 간략히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판권(版權)이란 일반적으로 업계에서 사용되는 용어이고, 저작권법의 용어로 표현하면 출판권을 지칭한다. 일본에서는 福澤이 'copyright'의 번역어로 '판권'이란 조어를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25)</sup> 판권은 사전적 정의로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인정된 재산권의 하나이며, 도서 출판에 관한 이익을 독점하는 권리"<sup>26)</sup>를 의미한다. 출판권에 대한 법률적 의미로는, 2006년 개정 저작권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면 출판권이란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이하 "복제권자"라 한다)는 그 저작물을 인쇄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출판할 권리"를 말한다. 이 출판권이 지니는 법적 효력은 일반적인 출판허락과 달리 매우 강력한 것이어서 일단 출판권을 설정해 주면 저작권자도 출판을 할 수 없다.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저작권법 제2조의 1)에 대하여 법이 그 창작자가 일정기간 자신의 저작물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며, 자신의 저작물을 타인이 무단으로 복제, 번역, 방송, 상연, 전송, 배포 등의 행위를 하거나 창작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권리이다.

지적소유권은 인간정신의 발달에 따라 재산권도 다양화되어 학문·예술에 대한 저작물이나 창조적 발명정신에 터잡은 신기술 등에 대한 권리도 하나의 소유로서 보호되어야 한다는 개념이다.<sup>27)</sup> 일반적으로 지적소유권은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의 2가지 유형으로 대별된다. 산업재산권은 고도의 발명에 대한 권리인 특허권, 소발명의 실용적인 고안에 대한 보호권인 실용신안권, 심미적인 디자인에 대한 보호권인 디자인권, 등록상표에 대한 보호권인 상표권 등으로 나누어진다.

이러한 법률적 정의에 입각해 보면 저작권의 하나인 판권이나 출판권을 저작권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아 보인다. 그러므로 저작권을 판권이나 출판권이라는 용어로 사용하는 경우는 향후 관련 규정의 개정을 통해 이를 조속히 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적소유권은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을 포괄하는 광의개념이므로 저작권만을 다루는 경우에는 좀 더 구체화된 명확한 권리명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5. 학술지 논문의 디지털 복제권 및 전송권 귀속 관계

여기에서는 인터넷 환경에서의 정보접근과 이용에 크게 작용하는 학술지 논문의 디지털 복제권 및 전송권 귀속관계 규정 현황을 알아보고자 한다. 본 분석은 저작권 귀속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25) 박성호, 저작권법의 이론과 현실(서울 : 현암사, 2006), p.44.

26) 네이버국어사전. <<http://krdic.naver.com>>

27) 송영식, 이상정, 황종환, 지적소유권법 상. 제9판(서울 : 육법사, 2005), p.33.



306종의 등재 학술지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그 분석결과는 다음의 <표 6>과 같다.

<표 6> 학술지 논문의 디지털 복제권 및 전송권 규정 현황

구 분	디지털 복제권과 전송권 규정함	디지털 복제권 규정함	전송권 규정함	계
인 문	4	0	0	4
사 회	1	3	4	8
자 연	1	5	0	6
공 학	2	2	0	4
의 약 학	4	1	0	5
농 수 해	0	0	0	0
예술체육	0	0	0	0
복 합	2	0	0	2
계	14	11	4	29

<표 6>에서 볼 수 있듯이, 디지털 복제권과 전송권을 모두 포함하여 규정한 학술지는 14종에 불과하였다. 디지털 복제권만 규정한 학술지는 11종이었고, 디지털 복제에 관한 언급 없이 전송권만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학술지는 4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문 분야의 「고문서연구」, 「사학연구」, 「한문교육연구」, 「한국한문학연구」의 4종의 학술지만이 정확하게 “저작권에는 디지털로의 복제권 및 전송권을 포함한다”고 명시하였다. 그 나머지 학술지들은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이를 불특정다수에게 공개하는 것”, “출판된 논문을 내외부의 전자데이터베이스에 실어 공개하는”, “인터넷 유통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저작권”, “디지털 저작권”, “전자파일을 포함한 복제”, “CD-ROM TITLE이나 광디스크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복제”, “기계가독 형태의 복제” 등의 용어를 사용하였다. 전송권을 따로 명시한 학술지는 「열린유아교육연구」, 「한국개발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유아교육연구」였다.

이처럼 디지털 복제권과 전송권, 디지털 복제권 또는 전송권에 대한 규정을 담아내고 있는 학술지는 조사 대상 306종 가운데 총 29종(9.5%)으로 매우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저작권 규정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학술지들이 디지털 인터넷 환경의 변화에 제대로 대처하는 적절한 권리 규정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결과라고 생각된다.

## 6. 학술지 논문의 저작권 양도 동의서

### 가. 학술지 논문의 ‘저작권 양도 동의서’의 다양한 명칭

현재 등재 학술지들은 게재 논문의 저작권 귀속 주체와 이를 보호하는 권리명 등의 내용을 편집

규정에 명시하고 있지만, 이와 함께 저작권 귀속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확화하기 위하여 연구자들에게 저작권 양도 동의서라는 별도의 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저작권 양도 동의서라는 명칭을 채용하였는데, 실은 학술지에 따라 다양한 명칭으로 언급되고 있다. 다음의 <표 7>은 저작권 양도 동의서를 지칭하는 명칭들을 정리한 것이다.

<표 7> '저작권 양도 동의서'를 지칭하는 다양한 명칭

국문 명칭	영문 명칭
게재 및 저작권 동의서	Copyright Release and Author Agreement
논문 투고서 및 저작권 이전 동의서	Copyright Transfer
원고(논문)게재 동의서	Copyright Transfer Form
저작권 양도 동의서	Copyright Transfer Agreement
저작권 양도 합의서	Copyright Transfer and Statement of Originality
저작권 이양 동의서	Transfer of Copyright Agreement
저작권 인계 동의서	
저작권에 관(대)한 동의서	
저작권 이양에 관한 동의서	
지적소유권 위임서	
저작권재산권 양도 동의서	
연구윤리서약 및 저작권 이양 동의서	

저작권 양도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면, 저작권의 양도란 “저작권의 전부나 일부를 일종의 재산권으로 이전하는 것을 통상 의미한다. 양도는 저작물의 사용에 대한 특정의 권리만을 부여하는 이용허락과는 달리, 저작권 자체를 이전하는 것이다.”<sup>28)</sup> 법률적 정의로는 2006년 개정 저작권법 제45조에서는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으며(제1항),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에 기초해서 저작권 양도의 특징을 집약하면 다음과 같다. 일단 저작자가 저작재산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 저작자는 자기의 저작권을 다시는 회복할 수 없다. 저작재산권은 그 권리의 전체를 양도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저작재산권은 권리 중의 일부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는 소유권과는 달리, 그 권리 중의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따라서 오픈 액세스와 오픈 아카이브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논문을 투고하는 연구자들이나 학술지의 편집진들은 저작권 양도가 지니는 이와 같은 법률적 의미와 특징, 그 영향력에 대해 반드시 잘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28) 최경수, 저작권표준용어집(서울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1993), p.63.

나. 학술지 논문의 '저작권 양도 동의서' 유무 현황

전술한 바와 같이 저작권 양도 동의서가 존재하되 학회나 저자 자신들 어느 한쪽으로 유리하게 권리 행사를 할 수 있게 내용이 유도될 경우 오픈 액세스 운동의 전개는 심각하게 제한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먼저 저작권 양도 동의서를 별도의 양식으로 규정하고 있는지의 현황부터 파악하고자 한다. 저작권 귀속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306종의 등재 학술지를 대상으로 그 유무를 조사하였다.

그 분석결과는 <표 8>에서 보듯이 저작권 양도 동의서를 요구하는 학술지의 전체 비율은 25.5%에 불과하였다. 나머지 74.5%에 해당하는 228종의 학술지들은 저작권 양도 동의서 양식을 마련하고 있지 않았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저작권양도동의서를 마련한 학회지의 비율은 자연분야가 57.1%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의약학 분야가 51.6%로 절반을 넘었을 뿐이다. 하지만 인문 분야는 저작권 양도동의서를 작성한 학회지가 1종도 없어 0%의 최저 비율을 나타냈다.

<표 8> 저작권 귀속관계를 규정한 학술지 논문의 '저작권 양도 동의서' 유무 현황

구 분	저작권 양도 동의서 유	저작권 양도 동의서 무	계	저작권 양도 동의서 요구 학술지명
인 문	0(0%)	40(100.0%)	40(100.0%)	
사 회	7(8.9%)	72(91.1%)	79(100.0%)	한국청소년연구, 교정연구, 언어청각장애연구, 대외경제연구,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한국비블리아학회지, International Journal of Early Children Education
자 연	25(59.5%)	17(40.5%)	42(100.0%)	Journal of Bacteriology and Virology, Bulletin of the Korean Mathematical Society, Communications of the Korean Mathematical Society, Journal of the Korean Mathematical Society, 대한영양사협회 학술지,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대한화학학회지, Bulletin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한국광학회지, Journal of Optical Society of Korea, Integrative Bioscience, 새물리, Journal of Korean Physical Society, 미생물학회지, The Journal of Microbiology, Journal of Biochemistry and Molecular Biology, 한국생물과학회지,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한국영양학회지, Nutrition Research and Practice, 한국자기학회지, 한국식품조리과학회지, 한국지역사회생물과학회지, Geoscience Journal, 한국진공학회지
공 학	9(17.3%)	43(82.7%)	52(100.0%)	대한금속·재료학회지, 한국도로학회논문집, 한국통신학회논문지, Metal and Materials International, Biotechnology and Bioprocess Engineering, International Journal of Automotive Technology, ETRI Journal, Macromolecular Research, 펄브레인
의 약 학	32(51.6%)	30(48.4%)	62(100.0%)	가정의학회지, 결핵 및 호흡기질환, 경락경혈학회지,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지, 대한내과학회지, 당뇨병, 대한병리학회지, 대한비뇨기과학회지, Experimental and Molecular Medicine, 대한성형외과학회지, 대한소화기학회지, Korean Circulation Journal, 대한스포츠의학회지, 대한신경외과학회지, 신경정신의학, 대한신장학회지, 천식 및 알레르기, Archives of Phamacal Research, 대한영상학회지, 대한응급의학회지, Journal of Biomedical Engineering research, 대한이비인후과학회지, 대한재활의학회지, 대한정신약물학회지, 대한체질인류학회지, 핵의학 분자영상, 대한흉부외과학회지, Yonsei Medical Journal, 대한간호학회지,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보건행정학회지, 한국전자현미경학회지
농 수 해	2(10.0%)	18(90.0%)	20(100.0%)	The Plant Pathology, Food Science and Biotechnology
예술체육	2(22.2%)	7(77.8%)	9(100.0%)	운동과학, 운동영양학회지
복 합	1(50.0%)	1(50.0%)	2(100.0%)	지중해지역연구
계	77(25.2%)	229(74.8%)	306(100.0)	

### 7. 학술지 논문의 저작권 귀속의 내용 및 단서

저작권 귀속관계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의 핵심은 논문의 권리 귀속 주체와 더불어 그 권리 귀속 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세한 내용과 단서일 것이다. 여기에서는 학술지 논문의 저작권 귀속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단서의 유무와 그 내용을 집중 분석하고자 한다.

#### 가. 학술지 논문의 저작권 귀속 단서 유무 현황

먼저 학술지가 저작권 귀속을 구체적으로 명기한 내용과 단서를 실제로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지의 현황을 조사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학술논문의 저작권 귀속의 단서 내용은 크게 ‘논문투고 규정’ 또는 ‘저작권양도동의서’에 명시되어 있다. 그래서 본 분석은 이 둘의 경우를 모두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그 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9>와 같다.

<표 9> 저작권 규정을 갖춘 학술지 논문의 저작권 귀속의 구체적인 내용 및 단서 구비 현황

구 분	단서 명기함			단서 명기하지 않음	계
	저작권 규정 자체	저작권 양도 동의서	계		
인 문	19	0	19(47.5%)	21(52.5%)	40(100.0%)
사 회	13	7	20(25.3%)	59(74.7%)	79(100.0%)
자 연	4	25	29(69.0%)	13(31.0%)	42(100.0%)
공 학	9	9	18(34.6%)	34(65.4%)	52(100.0%)
의 약 학	9	32	41(66.1%)	21(33.9%)	62(100.0%)
농 수 해	4	2	6(30.0%)	14(70.0%)	20(100.0%)
예술체육	3	2	5(55.6%)	4(44.4%)	9(100.0%)
복 합	1	1	2(100.0%)	0(0%)	2(100.0%)
계	62	78	140(45.8%)	165(54.2%)	306(100.0%)

저작권 귀속의 구체적인 내용과 단서를 명기하고 있는 학술지의 현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복합 분야 100.0%, 자연분야 69.0%, 의약학 분야 66.1%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에 비하여 인문 분야는 47.5%, 공학 분야는 34.6%, 농수해 분야는 30.0%, 사회분야는 25.3%의 낮은 비율을 나타냈다. 이를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권리 귀속 관계를 규정한 학술지 중 단서를 명기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학술지가 165종(54.2%)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각 학회의 편집진들이 학술논문의 권리처리를 종전의 관행을 답습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지 않음과, 저작권의 내용에 대한 낮은 이해 및 관련 단서 조항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라고 평가된다.

나. 학술지 논문의 권리 귀속의 구체적 내용 및 단서

학술지 논문의 권리 귀속의 구체적 내용 및 단서에 대한 분석은 ‘논문투고규정’ 자체와 ‘저작권양도동의서’에 수록된 각각의 내용을 권리 귀속의 주체별로 정밀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다시 3개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 학술지 논문의 저작권 귀속 주체가 ‘학회’인 경우
- 학술지 논문의 저작권 귀속 주체가 ‘저자’인 경우
- 학술지 논문의 저작권 귀속 주체가 ‘학회와 저자 공유’인 경우

〈표 10〉 학술지 논문의 저작권 귀속의 유형별 단서 내용 현황(\* 연구소 포함)

구 분	귀속주체 - 학회*		귀속주체 - 저자		귀속주체 - 학회와 저자 공유		계
	저작권 규정 자체	저작권 양도동의서	저작권 규정 자체	저작권 양도동의서	저작권 규정 자체	저작권 양도동의서	
인 문	13(68.4%)	0(.0%)	2(10.5%)	0(.0%)	4(21.1%)	0(.0%)	19(100.0%)
사 회	10(50.0%)	7(35.0%)	2(10.0%)	0(.0%)	1(5.0%)	0(.0%)	20(100.0%)
자 연	3(10.4%)	25(86.2%)	1(3.4%)	0(.0%)	0(.0%)	0(.0%)	29(100.0%)
공 학	9(50.0%)	9(50.0%)	0(.0%)	0(.0%)	0(.0%)	0(.0%)	18(100.0%)
의약학	9(22.0%)	32(78.0%)	0(.0%)	0(.0%)	0(.0%)	0(.0%)	41(100.0%)
농수해	3(50.0%)	2(33.3%)	1(16.7%)	0(.0%)	0(.0%)	0(.0%)	6(100.0%)
예술체육	3(60.0%)	2(40.0%)	0(.0%)	0(.0%)	0(.0%)	0(.0%)	5(100.0%)
복 합	1(50.0%)	1(50.0%)	0(.0%)	0(.0%)	0(.0%)	0(.0%)	2(100.0%)
계	51(36.4%)	78(55.7%)	6(4.3%)	0(.0%)	5(3.5%)	0(.0%)	140(100.0%)

다음의 〈표 10〉은 상기 3개의 권리귀속 주체별로 구분하여 조사한 저작권 귀속의 단서 현황을 정리하여 나타낸 것이다.

(1) 학술지 논문의 저작권 귀속 주체가 ‘학회’인 경우

〈표 10〉에서 볼 수 있듯이, 학술지 논문의 권리 귀속의 단서 구비 현황을 조사한 결과 논문의 저작권 귀속 주체가 학회인 경우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92.1%).

그 권리귀속을 규정한 내용 및 단서의 길이는 학회지에 따라 짧게는 두 세 줄에서 길게는 한 두 페이지에 이르기까지 차이가 있었다. 학회를 유일한 권리 귀속 주체로 인정하는 경우 그 권리귀속을 규정한 내용 및 단서는 학술지에 따라 조금씩 달랐다. 학회가 저작권의 귀속주체이지만 저자가 가지는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별 원저작권자가 가지는 권리의 범위와 조건, 서명에 대한 요구 등이 학술지에 따라 큰 폭의 차이를 나타냈다. 그래서 본 연구는 학술지 논문의 저작권 귀속 주체가 학회인 경우의 귀속 내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자 다음과 같이 두 부분으로 다시 세분하였다.

a. 학회가 온전히 저작권 귀속의 주체인 경우 권리 단서

이 경우의 단서는 양도 후 저자가 권리를 가지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학회가 온전히 저작권 귀속의 주체가 되는 경우이다. 그 단서의 실제 내용의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의 <표 11>과 같다. 한편 누리미디어가 참조용으로 학회에 보낸 '저작권이양동의서'의 내용도 여기에 해당하므로 <표 11> 하단에 추가하였다.<sup>29)</sup>

<표 11> 학회가 온전하게 저작권 귀속 주체인 경우 저작권 귀속의 내용 및 단서

구분	학회가 온전하게 저작권 귀속 주체인 경우 내용 및 단서
저작권 규정 자체	게재된 논문에 대해 본 학회는 저작권을 가지며, 논문의 저자가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을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재수록 하고자 할 때에는 본 학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 - 「문학과 영상」, 「근대영미소설」, 「미국사연구」, 「현대영미소설」
	투고된 논문은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함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판권에 관하여 유발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저자가 짐. -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pplication and Management」
	게재된 자료의 저작권은 본 연구원에 있음. 본 연구원의 사전 동의 없이 복제, 배포, 게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하여 처벌됨. - 「한국행정연구」
	학회에서 발간되는 모든 간행물의 소유권은 학회에 있으며, 간행물을 판매하여 발생하는 이익금은 학회에 소속됨. 학회에서 발간되는 모든 자료를 이용할 때는 학회의 승낙을 얻어야 하며, 위원회에서 결정함. - 「한국응용곤충학회지」, 「The Journal of Asia-Pacific Entomology」
저작권 양도 동의서	논문을 제출할 때는 모든 저자들이 사인한 논문 게재 신청서 및 저작권 이양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 저자(들)는 본 논문이 본 학술지에 게재되기를 희망하며 다음의 사항들에 동의하는 바임. - 1. 저자(들)는 본 논문이 창의적이며 다른 논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확인함. 2. 저자(들)는 본 논문의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함께 함. 3. 본 논문은 과거에 출판된 적이 없으며, 현재 다른 학술지에 게재를 목적으로 투고하였거나 투고할 계획이 없음. 4. 저자(들)는 본 논문이 본 학술지에 게재될 경우 본 논문에 따른 권리, 이익, 저작권 및 디지털 저작권에 대한 모든 권한 행사 등을 본 연구원에 이양함. - 「한국청소년연구」
	저자들은 저작권 이양 동의서를 작성하여 보내야 함. 저자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하여 동의함. 1. 저자(들)는 본 논문이 창의적이며 다른 논문의 저작권 침해 및 비방 등을 내포하지 않음을 확인함. 2. 저자(들)는 본 논문에 실제적이고 지적인 공헌을 하였으며 논문의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공유함. 3. 저자(들)는 본 논문이 과거에 출판된 적이 없으며, 국내외 학술지에 제출할 계획이 없음. 4. 본 잡지의 발행인은 저자(들)나 본 잡지 발행인의 허락 없이 타인에 이루어지는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5. 저자(들)는 본 논문이 학회지에 게재될 경우, 본 논문에 따른 권리, 이익, 저작권 및 디지털 저작권에 대한 모든 권한 행사 등을 학회에 위임함. 향후 다른 논문에 본 논문의 자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본 학회로부터 서면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자료가 발표된 원논문을 밝혀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였음. - 「대한신장학회지」
※ 누리미디어 - 저작권 양도 동의서	저자(들)는 본 논문이 000학회지(논문지)에 게재되기를 희망하며 게재가 확정되는 경우 아래의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하여 동의함을 확인하는 바임. 1. 저자(들)는 본 논문이 창의적이며 다른 연구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확인함. 2. 저자(들)는 본 논문에 실제적이고 지적인 공헌을 하였으며 논문의 내용에 대하여 모든 책임이 있음을 확인함. 3. 본 논문은 과거에 출판된 적이 없으며, 현재 다른 학술지에 게재를 목적으로 제출되었거나 제출할 계획이 없음. 4. 본 학회지의 발행인은 저자(들)나 본 학회지 발행인의 허락 없이 타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배타적인 권리가 있음. 5. 저자(들)는 본 논문이 000학회지(논문지)에 게재될 경우, 본 논문의 저작재산권 행사에 관한 권리 일체의 사항을 000학회에 이양함. 하단에 저자((제1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1, 공동저자2, 공동저자3))의 서명란이 있음

29)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 학술저작물 권리보호를 위한 센터 업무 현황.  
<<http://www.copycle.or.kr>> [cited. 2007. 12. 3]

학회가 온전히 저작권 귀속의 주체가 되는 경우 그 권리를 명시한 내용 및 단서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장단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장점으로는 학회가 당해 학회지에 수록된 모든 저자의 논문의 저작권을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반면에 학회가 저작권의 귀속 주체임에도 대부분 저작권 소유와 논문내용에 대한 책임성이 별개로 움직이고 있고, 디지털 매체로의 변환, 상업적 이용 등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 저작권 다툼의 소지가 있으며, 심사를 거쳐 게재된 논문에 대한 정보공유 환경에서 요구되는 저자 셀프 아카이빙이나 기관 리포지터리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으며, 대한민국 정부나 공적 연구지원비로 수행된 논문의 경우 해당기관에서의 논문의 사용, 복제, 배포 등이 차단될 수 있음<sup>30)</sup>을 알 수 있었다.

b. 학회가 저작권의 귀속주체이지만, ‘저작권 양도 후 저자가 가지는 권리’를 인정하는 내용 및 단서

학회가 저작권의 귀속주체이지만, 저작권 양도 후 저자가 가지는 권리 등을 인정하는 내용 및 단서를 마련하고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표 12〉는 저작권 양도 후 저자가 가지는 권리의 단서를 어디에서 규정하고 있는지를 분석한 것이고, 〈표 13〉는 그 대표적인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한 것이다. 한편 본 실증 분석에서는 학회의 동의나 허락을 얻은 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 순수하게 저작권 양도 후에 저자가 갖는 권리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내용만을 조사대상으로 삼았다.

〈표 12〉 학회가 저작권의 귀속주체이지만, ‘저작권 양도 후 저자가 가지는 권리’ 현황

구 분	저자가 가지는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		계
	저작권 규정 자체	저작권 양도동의서	
인 문	6	0	6
사 회	2	0	1
자 연	0	8	4
공 학	5	4	7
의약학	1	6	5
농수해	0	2	1
예술체육	1	0	1
복 합	0	0	0
계	15	20	35

〈표 12〉에 보듯이, 학회를 저작권의 귀속주체로 하고 있는 129종의 학술지 가운데 학회로의 저작권 양도 후에도 저작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학술지는 총 35종(27.1%)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30) 윤희윤·이재민, *op. cit.*, pp.26-28.

그 중에서 저작권 양도 동의서에서 분명하게 이를 규정한 것은 20종(15.5%)에 불과하였다.

〈표 13〉 학회가 저작권 귀속주체이지만, ‘저작권 양도 후에 저자가 가지는 권리’ 내용 및 단서

구분	학회가 저작권의 귀속주체이지만 ‘저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내용 및 단서
저작권 규정 자체	<p>필자는 논문 전체 또는 일부분을 기존의 인쇄매체로 재수록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본 학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 그러나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과 설립 등을 전자매체로 출판 혹은 게재할 경우에는 학회 및 투고자는 상호 동의 없이 이를 각자의 책임 하에 전자매체로 출판 및 게재할 수 있음. 단, 이 때 투고자는 해당되는 글의 출처를 명확하게 밝혀야 함. - 「영국연구」</p> <p>게재된 논문 등의 저작권은 본 학회가 소유하며, 저작권에는 디지털로의 복제권 및 전송권을 포함함. 게재된 논문 등의 필자가 본인의 논문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학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승인함. - 「고문서연구」, 「사학연구」, 「한국교육연구」, 「한국한문학연구」</p> <p>게재된 논문에 관련된 일체의 저작권은 본 학회에 귀속되나, 저자는 다음의 권리를 유지함 - 가. 저자는 논문의 일부를 다른 논문에 사용할 수 있음. 나. 저자 혹은 그의 소속기관은 상업적인 목적이 아닌 경우, 저자 개인용도 혹은 소속기관 내부 용도로 논문을 재인쇄할 수 있음. 다. 저자 혹은 그의 소속기관은 학회에서 논문이 출판되기 전에, 학회에서 출판예정임이 명시된 논문의 일부 혹은 전부를 제한된 부수만큼 배포할 수 있음. 라. 논문이 대한민국 정부 혹은 기타기관의 지원에 의한 연구결과인 경우, 학회는 정부 혹은 기타 기관이 무상으로 학회에 저작권을 이양한 것으로 간주함. - 「전기공학회논문지」</p>
저작권 양도 동의서	<p>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본 협회(학회)에 귀속함. 양도 후 저자가 가지는 권리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서명한 저자들이 비영리적 목적의 개인적 사용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서명한 저자와 고용주간에 체결한 선계약과 대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논문의 수정, 개작, 2차적 저작물 작성, 구두 발표, 저작물을 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2. 본 학회가 특정한 논문을 사용하거나 재판 또는 복제할 수 있도록 제3자에게 허락할 경우(수업 목적이나 도서관 보존을 위한 경우는 제외)에는 서명한 저자의 허락을 받아야 함. 3. 저작권 이외의 다른 모든 지적재산권은 저자가 가짐. 모든 저자의 승낙을 받은 대표저자가 본 동의서에 서명해야 함. - 「대한영양사협회 학술지」, 「한국생활과학회지」,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p> <p>투고된 논문의 배타적인 저작권은 학회로 양도되며, 양도 후 저자들은 다음의 권리를 가짐. - A. 저자들의 비영리적 목적의 개인적 사용을 위해 논문을 수정 및 개작하거나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거나 구두로 발표하거나 또는 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B. 논문의 고용주(고용기관)의 직무저작물로 작성된 경우, 저자들의 고용주는 비즈니스 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용도로 본 학회의 승인 없이도 논문을 수정, 개작, 2차적 저작물 작성, 출판, 재판, 복제 및 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C. 본 학회가 특정 논문을 사용하거나, 재판 또는 복제할 수 있도록 제3자에게 허락할 경우(교육 목적이나 도서관 보존을 위한 경우는 제외)에는 서명한 저자 또는 고용주로부터의 허락을 받아야 함. D. 저작권 이외의 다른 모든 지적재산권을 가짐. E. 한국정부기관의 계약 하에 또는 외국 정부기관의 고용인의 신분으로 작성한 논문의 경우, 본 학회는 정부기관이 논문을 출판, 번역, 복제, 사용하거나 배포하는 것을 무상으로 허락한 것으로 간주함. - 「Macromolecular Research」</p> <p>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학회로 양도되며, 양도 후 저자들은 다음의 권리를 가짐. - 1. 저작권 이외의 모든 재산권. 2. ETRI 저널 출판 후 편집저작물, 다른 출판물 및 개인적인 웹사이트나 고용기관의 웹사이트와 같은 저자들의 2차적 저작물에 본 논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록할 수 있는 권리 3. 교육적 목적 및 저자 고용기관 내부에서의 사용을 위한 목적으로 논문을 복제하고 배포할 수 있는 권리, 4. ETRI 저널 버전이 사용되지 않거나 다른 잡지에 출판 허가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 ETRI 저널 출판 후 제3자가 논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판하거나 번역하는 것을 허락할 수 있는 권리 등을 가짐. 모든 저자의 승낙을 받은 대표저자가 본 동의서에 서명해야 함. - 「ETRI Journal」</p> <p>논문을 투고하는 자는 저작권을 본 학회에 이양하는 학회양식에 의한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저작권 이양 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 학회 규정에 의한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게재하지 아니함. 저작권이양 동의서의 내용 및 단서는 다음과 같음.</p> <p>I. 본 양식에 의한 저작권 이양 후에 저자가 가지는 권리</p> <p>(1) 논문의 내용으로 기술된 특허, 등록상표, 독창적인 신기술, 연구 기법 및 응용에 관한 권리 및 기타 법으로 보장된 권리. (2) 저자가 저자의 논문을 교육을 위한 교재로 사용하거나 저자의 취직, 진급, 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의 작성, 연구 결과의 비수익성 광고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복사, 복제, 및 인쇄를 할 권리. (3) 저자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 연구비를 지원하고 그 사실이 논문에 표시된 단체, 저자의 개인 WEB SITE에 논문의 전문 혹은 일부를 게재하고 배포할 권리. (4) 저자가 교과서 등 서적과 종설의 기술, 저자에</p>



	<p>의한 강의, 연구발표 및 워크숍 등을 위한 교재 제작을 위하여 논문의 전부 혹은 일부를 사용할 권리.</p> <p>II. 본 양식에 의한 저작권 이양 후에 저자가 가지는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단서                  (1) 위에 허락된 목적으로 논문의 전부 혹은 일부를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저작권이 사단법인 한국전자현미경학회에 속함을 표시하여야 함. (2) 논문을 상품화하기 위하여 논문에 대한 권리를 영리단체에 이양할 수 없다. 단, I(1)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함.</p> <p>III. 저작권의 소유 및 서명에 대한 단서                  (1) 저자 중 1인(논문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저자)이 모든 저자를 대표하여 본 저작권 이양 동의서에 서명하여야 함. (2) 게재논문의 저작권이 저자가 아닌 저자를 고용하고 있는 학교, 회사, 연구소 혹은 단체에 속한 경우에는 저작권을 행사하는 해당 단체의 저작권 담당자가 저작권이양동의서에 서명하여야 함. (3) 본 저작권 이양동의서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 및 연구비를 지원한 기관 혹은 단체가 본 논문에 대한 저작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행사를 제한하지 아니함. (4) 본 저작권이양동의서에 서명함으로써 저자는 본 논문이 학술대회에서의 초록을 제외한 다른 형태로 발간되지 않았으며,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음을 서약함. (5) 논문의 전부 혹은 일부가 학회지에 게재되기 전에 어떠한 형태로든 상업적인 목적으로 제작되거나 유포된 경우라도 학회지 게재 이후에는 상업적인 목적을 위하여 학회지에 발간된 내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포함하는 새로운 내용으로 변경하여 제작하거나 유포할 수 없음. (6) 본 저작권이양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은 저자가 본 저작권이양동의서에 기재된 모든 내용을 읽고, 그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그 내용에 동의하는 것을 의미함. - 「한국전자현미경학회지」</p>
--	--

학회가 저작권의 귀속주체이지만 양도 후 저자가 가지는 권리를 인정하는 내용 및 단서 가운데 오픈 액세스와 아카이빙의 활성화에 긍정적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을 전자매체로 출판 혹은 게재할 경우에는 학회 및 투고자는 상호 동의 없이 이를 각자의 책임 하에 전자매체로 출판 및 게재할 수 있음.</li> <li>• 저작권 양도 후 저자(들)는 저널 출판 후 편집저작물, 다른 출판물 및 개인적인 웹사이트나 고용기관의 웹 사이트와 같은 저자들의 2차적 저작물에 본 논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li> <li>• 저작권 양도 후 저자(들)는 교육적 목적 및 저자 고용기관 내부에서의 사용을 위한 목적으로 논문을 복제하고 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li> <li>• 저작권 양도 후 저자(들)는 저자의 논문을 교육을 위한 교재로 사용하거나 저자의 취직, 진급, 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의 작성, 연구 결과의 비수익성 광고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복사, 복제, 및 인쇄를 할 권리를 가짐(단, 학회지 게재 이후에는 상업적인 목적을 위하여 학회지에 발간된 내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포함하는 새로운 내용으로 변경하여 제작하거나 유포할 수 없음).</li> <li>• 저작권 양도 후 저자(들)는 도서관 보존을 위한 경우 복제를 허락함.</li> <li>• 저작권 양도 후 저자(들)는 저자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 연구비를 지원하고 그 사실이 논문에 표시된 단체, 저자의 개인 WEB SITE에 논문의 전부 혹은 일부를 게재하고 배포할 권리를 가짐.</li> <li>• 저작권양도동의서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 및 연구비를 지원한 기관 혹은 단체가 본 논문에 대한 저작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행사를 제한하지 아니함.</li> </ul> |
|---|

비록 극히 일부의 학술지이기는 하지만, 권리 귀속의 내용 및 단서를 유연하고 치밀하게 규정하려는 지혜를 보임에 따라 학회 웹 사이트상에서의 온라인 배포, 저자 셀프 아카이빙 및 기관 리포지토리를 통한 인터넷 유통이 가능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뿐만 아니라 국내외 정부기관이나 공적 연구지원비로 수행된 논문의 경우 해당기관에서의 논문의 사용, 복제, 배포 등을 자유로이 할 수 있음 또한 확인되었다.

(2) 학술지 논문의 저작권 귀속 주체가 저자인 경우

이는 저자가 학술지 논문의 저작권 귀속 주체이고, 통상 학회가 투고한 논문의 인쇄물 형태의 출판권과 배포권만 가지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논문의 저자에 의한 셀프 아카이빙이 가능하며, 이용자들 또한 저자 홈페이지나 저자의 소속 학과나 대학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학술지에 게재된 우수한 학술논문을 무료로 접근하여, 이용하거나 다운받을 수 있다.

〈표 14〉 저자가 저작권 귀속 주체인 경우 그 귀속 내용 및 단서

구분	학문분야	저작권 귀속 내용 및 단서
저작권 규정 자체	인문	1. 게재하기로 판정한 논문에 대해서는 발간 전에 필자에게 1회 내지 2회에 걸쳐 교정쇄를 전달하며, 필자는 받은 후 5일 이내에 필요한 교정 처리를 하여야 함. 논문 교정은 전적으로 필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며, 인쇄상의 오류로 필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본 학회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음. 2. 발간한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필자가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본 학회의 출판 사업과 관련하여 논문의 일부나 전부를 재 인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필자의 동의 없이 출판하고 필자에게 사후 통보함. 3. 개인의 연구나 학교 교육용 자료로 쓰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무단 복제할 수 없음. - 「영미문학 페미니즘」 본 학회의 출판사업과 관련하여 논문을 재인쇄할 경우 필자의 동의 없이 출판하고 사후 필자에게 통보함. 학교교육용 자료나 개인연구를 제외하곤 본 학술지에 실린 논문을 무단 복제할 수 없음. - 「비평과이론」
	사회	게재된 글의 저작권자는 본 연구소(학회)가 이를 CD-ROM TITLE이나 광디스크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복제하여 보관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무상으로 허락한 것으로 간주함. - 「성균관법학」, 「상사법연구」
	자연	본 학술지에 투고된 모든 논문들은 저작권법에 의한 양식에 저자의 서명 없이 출판되지 않을 것이며 다른 출판물에 발표된 내용을 발췌 사용하기 위한 허가는 저자의 책임임. - 「대한원격탐사학회지」
	농수해	본 학술지에 제출된 논문은 다른 출판사에 의해 출판될 계획이거나 상당히 유사한 형태로 다른 곳에서 출판되어서는 안 됨.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저자가 가지며, 제3자가 출판하기 위해서는 저자와 학회 모두에게서 저작권 허락을 받아야 함. - 「Journal of Plant Biotechnology」

그러나 학회의 홈페이지에서 학술지에 수록된 여러 저자의 논문을 배포하거나 기관 리포지토리를 구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정이 복잡해진다. 학회가 투고한 논문을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내외부에 공개하거나 원문DB서비스업체와 계약을 맺어 유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디지털 복제와 전송, 2차적 저작물 작성 등에 관한 권리를 명시적으로 양도받거나 허락받지 않은 한, 학회와 기관 리포지토리를 구축하려는 기관은 개별 저작권자를 상대로 일일이 양도 또는 허락을 받고 해야 하기 때문이다.

조사 결과 저자가 귀속주체가 되는 학술지는 〈표 14〉에서 볼 수 있듯이 불과 6종에 불과했고, 「성균관법학」, 「상사법연구」를 제외하고는 학회의 디지털 복제, 배포, 영리업체를 통한 온라인 유통에 대해 언급한 것이 없었다. 또한 학술지 논문의 기관 리포지토리에의 수록을 허용하는 내용을 명시한 학술지도 없었다.

(3) 학술지 논문의 저작권 귀속 주체가 '학회와 저자 공유'인 경우

학술지 논문의 저작권 귀속 주체를 학회와 저자가 공유하도록 규정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권리 귀속을 규정한 학술지는 총 5종이었다. <표 15>는 그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조사 결과 「동남아시아연구」지는 학술적 목적인 경우 학회와 저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학술적 목적이외의 사용 시에만 학회 사무국에 요청해서 반드시 서면 허가를 받은 후에 다운로드함”이라고 명시하고 있었다. 이에 근거하면 학술목적의 저자 셀프 아카이빙이나 학회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유통에 의해 누구나 학술지 논문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무리가 없다고 해석된다. 그러나 학술지 논문의 기관 리포지터리에의 수록은 고려되지 않았다.

<표 15> 학회와 저자가 저작권을 공유하는 경우의 저작권 귀속 내용 및 단서

구분	학문분야	저작권 귀속 내용 및 단서
저작권 규정 자체	인문	투고된 논문은 게재 여부와 상관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게재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저자와 학회가 공동으로 가짐. 따라서 게재 논문 전체 혹은 부분을 재수록할 경우에는 사전에 저자와 학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 - 「스페인문학」, 「영어어문교육」, 「Foreign Language Education」, 「일본학보」
	사회	본 논문의 저작권은 학회 및 저자의 소유로 되어 있으니, 순수한 학술적 목적 이외의 사용에는 학회 사무국에 요청하셔서 반드시 서면 허가를 받으신 후에 다운로드 하시기 바람. - 「동남아시아연구」

#### IV. 학술지 논문의 오픈 액세스와 아카이빙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 대응 방안

본 연구는 앞에서 검토한 국내 학술지 논문의 저작권 분쟁 사례의 분석 결과와 학술지 논문의 저작권 귀속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학술지 논문의 오픈 액세스와 아카이빙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 대응방안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1) 논문투고규정 내 저작권 규정의 마련

본 조사대상 학술지의 3분의 1만이 저작권 규정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논문투고규정에 설정된 저작권 규정은 학술지 논문의 권리 귀속을 내외부에 공개적으로 명시한 것으로서, 적법한 권리 처리를 위한 안전장치로 작용한다. 따라서 나머지 3분의 2에 달하는 학술지들은 빠른 시일 내에 논문투고규정에 반드시 저작권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 저작권 귀속 주체의 명확화

저작권 규정을 갖추고 있는 306종의 학술지만이 학회, 저자, 학회와 저자 공유 등으로 저작권

귀속 주체를 명시하고 있다. 나머지 학술지들은 논문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분명하게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인쇄 매체 시대에서 묵인되던 문구인 “학회로 모든 저작권이 귀속된다”는 표현은 지양한다. 다양한 형태의 복제, 전송, 2차적 저작물작성권, 배포권 등에 관한 권리 귀속 주체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상술한다.

### (3) 저작권을 칭하는 명칭의 정비

학술지 논문에 대해 저자가 가지는 권리 명칭으로 저작권 이외에도 판권, 지적소유권 등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저작권의 하나인 출판권을 지칭하는 판권을 저작권을 총칭하는 용어로 사용하는 것, 또는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을 포괄하는 광의 개념인 지적소유권으로 저작권을 지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학술지에 수록된 논문에 대한 저작자가 가지는 권리명칭으로는 저작권이라는 용어를 채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 (4) 디지털 복제 및 전송에 관한 권리 귀속의 명확화

학술지 논문의 디지털 복제와 전송에 관한 권리 귀속은 논문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정보접근 및 제공에 크게 작용한다. 저작권 규정을 갖추고 있는 학술지 가운데에서도 디지털 복제와 전송에 관한 권리 귀속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매우 적었다. 따라서 학술지들의 적법한 온라인 접근과 유통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학술지에 대하여 저작권자가 가지는 디지털 형태의 복제권과 전송권에 관한 귀속 관계를 정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 (5) 양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의 저작권은 개별 원저작자에게 있다. 원저작권자는 저작재산권의 전부나 일부를 제3자(학회)에게 양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양도는 저작물의 사용에 대한 특정의 권리를 부여하는 이용허락과는 달리, 저작자가 저작재산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게 되면 저작자는 자기의 저작권을 다시는 회복할 수 없어 자신의 저작물을 사용하는데 제약을 받게 된다. 그런데 대다수의 학회가 논문을 투고한 개별 원저작권자로부터의 서면 동의 없이, “투고된 논문에 대한 모든 저작권을 학회에 양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 학회가 이처럼 일방적으로 규정하여 일체의 저작권을 가진 자로 행사하는 관행은 재고되어야 한다.

### (6) 저작권 양도 동의서의 마련 및 그 제출의 정착화

저작권에 대한 양도가 행해지는 경우 저작권 규정에서 단순히 양도한다는 문구를 명시하는 것만으로는 양수인이 모든 저작권을 양도받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학술지 논문의 저작권 양도의 범위와 조건, 저작권 양도 후 원저작권자 가지는 권리 범위와 조건 등을 보다 정확하고 상

세하게 규정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양도 동의서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저작권 양도 동의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논문 투고자로부터의 제출이 정착되어야 한다. 그래서 저작권 양도 동의서 양식 내에 “논문을 투고하는 자는 저작권을 본 학회에 양도하는 학회양식에 의한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저작권 양도 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 학회가 규정한 저작권 양도 동의서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라는 문구를 삽입한다. 아울러 논문 투고자들이 이에 적극 동참하도록 잘 공지하고 홍보한다.

(7) 오픈 액세스와 아카이빙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 귀속 내용과 단서의 명확화

a. ‘학회’가 저작권 귀속 주체인 경우

이 경우는 ‘저작권 양도 동의서’를 갖추고, 저작권 양도 동의서의 내용 및 단서에 아래의 사항들이 수용될 수 있도록 규정한다.

- ①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의한 유료의 온라인 유통 허용, ② 학회 홈페이지를 통한 유통 허용, ③ 학회로 저작권 양도 후, 저자가 가지는 권리에 학술 목적의 저자 셀프 아카이빙 허용, ④ 공적 기금을 투자한 단체에서의 아카이빙에 의한 학술목적의 자유이용 허용, ⑤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기관 리포지터리나 전자도서관에서의 무상의 자유이용 허용, ⑥ ①②⑤의 경우 개별 원저작권자의 반대의를 명시적으로 확인하는 조치 강구. 이에 해당하는 논문은 본 적용에서 제외.
- 상기의 사항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 저작권을 양도 받은 학회는 학술지를 종이 문서 외에 데이터베이스 등의 전자매체로 구축하여 유통하거나 학회 홈페이지에 게재 및 배포할 수 있다. 단, 학회가 순수한 학술적 목적 이외의 데이터베이스 등의 전자 매체로 저자의 논문의 전부나 일부를 유통시키고자 할 경우 이에 동의하지 않는 논문의 저자는 그 동의 확인란에 반대 의사를 기재하면, 당해 논문은 복제, 전송, 배포하는데 제공되지 아니한다.
- 학회로 저작권이 양도된 후 저자는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 a. 저자가 교육 또는 개인의 연구 등 비영리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논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하고 배포할 수 있는 권리
  - b. 학술 목적으로 논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저자의 개인 웹사이트, 저자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웹사이트, 연구비를 지원한 단체의 웹사이트에 게재하고 배포할 수 있는 권리
- 학회나 저자는 문화 발전 및 학문연구에 기여하거나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기관 리포지터리나 전자도서관 등이 무상으로 논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차적 저작물로 작성하여 전송하거나 제공함에 동의한다. 이에 동의하지 않는 논문의 저자는 반대의를 본 양식의 동의 확인란에 체크 또는 기재하면, 당해 논문은 복제, 전송, 배포하는데 제공되지 아니한다.

b. ‘저자’가 저작권 주체인 경우

이 경우는 ‘저작물 이용 동의서’를 갖추고, 저작물 이용 동의서의 내용 및 단서에 아래의 사항들이 수용될 수 있도록 규정한다.

- ①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의한 유료의 온라인 유통 허용, ② 학회 홈페이지를 통한 유통 허용,

③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기관 리포지터리나 도서관에서의 무상의 자유이용 허용, ④ 이용기간과 이용기간의 자동 연장, ⑤ ①②③의 경우 개별 원저작권자의 반대의사를 명시적으로 확인하는 조치 강구. 이에 해당하는 논문은 본 적용에서 제외.

상기의 사항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 저자는 학회가 저자의 논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데이터베이스 등의 전자매체로 구축하여 전송 및 배포하거나 학회 홈페이지에 게재 및 배포할 수 있음을 허락하고 동의한다. 단, 학회가 순수한 학술적 목적이외의 데이터베이스 등의 전자매체로 구축하여 저자의 논문의 전부나 일부를 유통시키고자 할 경우 이에 동의하지 않는 논문의 저자는 반대의사를 본 양식의 동의 확인란에 기재하면, 당해 논문은 복제, 전송, 배포하는데 제공되지 아니한다.
- 저자는 문화 발전 및 학문연구에 기여하거나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기관 리포지터리나 전자도서관 등이 무상으로 논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차적 저작물로 작성하여 전송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허락하고 동의한다. 이에 동의하지 않는 논문의 저자는 반대의사를 본 양식의 동의 확인란에 체크 또는 기재하면, 당해 논문은 복제, 전송, 배포하는데 제공되지 아니한다.
- 학술지 논문에 대한 이용 기간은 3년<sup>31)</sup>으로 하고 계약 종료 2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기간은 자동으로 계속 연장한다.

c. '저자와 학회'가 저작권을 공유하는 경우

이 경우는 '저작물 이용 동의서'를 갖추고, 저작물 이용 동의서의 내용 및 단서에 아래의 사항들이 수용될 수 있도록 규정한다.

①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의한 유료의 온라인 유통 허용, ②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기관 리포지터리나 전자도서관에서의 무상의 자유이용 허용, ③ 이용기간과 이용기간의 자동 연장, ④ ①②의 경우 개별 원저작권자의 반대의사를 명시적으로 확인하는 조치 강구. 이에 해당하는 논문은 본 적용에서 제외.

상기의 사항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 학회가 저자의 논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순수한 학술적 목적이외의 데이터베이스 등의 전자매체로 구축하여 유통시키고자 할 경우 이를 허락하고 동의한다. 이에 동의하지 않는 논문의 저자는 반대의사를 본 양식의 동의 확인란에 기재하면, 당해 논문은 복제, 전송, 배포하는데 제공되지 아니한다.
- 학회와 저자는 문화 발전 및 학문연구에 기여하거나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기관 리포지터리나 전자도서관 등이 무상으로 전부 또는 일부를 2차적 저작물로 작성하여 전송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허락하고 동의한다. 이에 동의하지 않는 논문의 저자는 반대의사를 본 양식의 동의 확인란에 체크 또는 기재하면, 당해 논문은 복제, 전송, 배포하는데 제공되지 아니한다.
- 학술지 논문에 대한 이용 기간은 3년으로 하고 계약 종료 2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기간은 자동으로 계속 연장한다.

31) 학술지 논문에 대한 이용 기간을 '3년'으로 설정한 것은 저작권법 제60조(출판권의 존속기간 등) 제1항에 명시된 "출판권은 그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맨 처음 출판한 날로부터 3년간 존속한다"는 규정에 근거하였음.

이상에서 학술지 논문의 오픈 액세스와 아카이빙의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 귀속 내용 및 단서를 3가지 유형으로 제시하였다. 그런데 대다수 학술지의 저작권은 학회에 귀속되어 있고 학회가 저작권 업무를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저작권 귀속 주체가 학회인 경우의 권리귀속 내용 및 단서가 현실적으로 오픈 액세스와 아카이빙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가장 실효성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 (8) 저자의 서명 의무화

법적 분쟁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또 하나의 조치로서 저자(들)의 서명을 확실하게 받아 두는 것이 필요하다. “본 저작권 양도 동의서 또는 이용 동의서에 모든 저자들이나 저자 중 1인(논문에 대한 대표저자로 저자들이 합의하여 승인한 사람)이 반드시 서명하여야 한다. 본 저작권 양도 동의서(또는 저작물 이용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은 저자가 본 저작권 양도 동의서(또는 저작물 이용 동의서)에 기재된 모든 내용을 읽고 그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그 내용에 동의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문구를 하단에 명시하도록 한다.

## V. 결론 및 제언

학술지는 학술 정보의 핵심매체로서, 시중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발행되는 도서와 달리 개방과 공유를 지향하는 대표적인 비영리성 저작물이다. 우리나라에서 학술지의 발행은 대부분 비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학회나 연구소 등이 주관하고 있고, 학술지 논문의 인터넷 유통과 아카이빙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나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의 정부출연기관과 상업적인 원문DB서비스업체인 한국학술정보(주)나 누리미디어가 주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학술지의 오픈 액세스 운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지만, 저작권 문제가 학술지 논문의 오픈 액세스와 아카이빙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가 한국학술정보(주)와 누리미디어를 각기 상대로 학술지 논문의 권리 귀속을 문제 삼아 저작권 분쟁 조정신청, 저작권 침해의 민·형사상의 고소를 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검토 결과 학회로의 저작권 양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학회로의 저작권 양도가 규정되어 있더라도 학회의 디지털 매체로의 변환, 상업적 이용의 허용됨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면, 종래의 목시적 관행을 비판 없이 따라 행하는 학회의 상업적 이용은 재고될 필요성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학술지 논문의 저작권 귀속 현황과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실증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학진에 등재된 학술지 906종 전체를 조사대상으로 삼아 2007년

7월에서 8월에 걸쳐 각 홈페이지의 논문투고규정을 일일이 서핑하여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다. 학술지 논문의 권리 귀속 규정 유무, 학술지 논문의 권리 주체, 학술지 논문의 권리 귀속을 규정하는 권리명, 저작권 양도 동의서의 유무 현황, 저작권 귀속의 단서 유무, 학회가 저작권 귀속 주체인 경우(학회에 저작권이 양도된 경우와 학회가 저작권 귀속 주체이지만 저작권 양도 후 저자가 가지는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로 세분) 저작권 귀속의 내용 및 단서, 저자가 저작권 귀속 주체인 경우 저작권 귀속의 내용 및 단서, 그리고 학회와 저자가 저작권을 공유하는 경우의 저작권 귀속 내용 및 단서 등을 총체적으로 정밀 분석하였고 문제점도 논의하였다. 그 분석 결과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 학술지의 66.2%에 달하는 학술지들은 적법한 권리 처리에 필수적인 저작권 규정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 저작권 귀속 주체로는 학회가 28.8%로 가장 많았고, 학회와 저자가 공유하는 경우는 1.2%, 저자인 경우는 0.7%로 조사되었다. 학술지 논문의 권리를 규정한 명칭으로 저작권이 23.2%, 판권이 6.7%, 지적소유권이 0.8%의 비율을 보였다. 디지털 복제권과 전송권을 모두 규정한 학술지는 총 14종이었고, 저작권 양도 동의서를 요구하는 학술지는 저작권 규정을 갖춘 306종의 학술지 가운데 25.5%에 불과하였다. 저작권 귀속을 상술하는 내용 및 단서를 갖추고 있는 비율은 저작권 규정을 갖추고 있는 학술지 가운데 45.8%였고, 그 가운데 저작권 귀속 주체의 유형이 학회인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학회가 온전히 학술지 논문의 저작권 귀속주체인 경우 저작권 귀속의 구체적인 내용과 단서를 명기하고 있는 것은 94종이었다. 학회가 저작권의 귀속주체이지만, 저작권 양도 후 저자가 가지는 권리를 인정하는 학술지는 35종이었다. 저작권 귀속 주체가 저자인 경우 저작권 귀속의 내용과 단서를 명기한 학술지는 총 6종이었고, 학회와 저자 공유인 경우 저작권 귀속의 내용과 단서를 명기한 학술지는 총 5종이었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이상에서의 학술지 논문의 저작권 분쟁 사례에서 확인한 사실과 학술지 논문의 저작권 귀속 현황과 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국내 학술지 논문의 오픈 액세스와 아카이빙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 대응방안을 제4장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논문투고규정 내 저작권 귀속 규정의 마련, ② 저작권 귀속 주체의 명확화, ③ 저작권을 칭하는 명칭의 정비, ④ 디지털 논문 및 전송에 관한 귀속의 명확화, ⑤ 양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 ⑥ 저작권 양도 동의서 마련 및 그 제출의 정착화, ⑦ 오픈 액세스와 아카이빙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 귀속 내용과 단서의 명확화 - a. 학회가 저작권 귀속 주체인 경우, b. 저자가 저작권 귀속 주체인 경우, c. 학회와 저자가 저작권을 공유하는 경우의 3가지 유형, ⑧ 저자 서명의 의무화이다.

따라서 본 연구가 제시한 학술지 논문의 오픈 액세스와 아카이빙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 대응방안은 학회가 저작권 규정, 저작권 양도 동의서 또는 저작물 이용 동의서를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들의 규정 및 양식이 마련된 경우에는 보다 개선된 이상적인 방향으로의 수정·보완을 도모하는데 작으나마 도움이 될 것이다.



이제 학회, 연구자, 도서관, 유통기관 등의 우리 모두는 인터넷 환경에서의 학술지 논문의 자유로운 접근 및 무료 이용, 정보 공유, 아카이빙을 위해 오픈된 마인드로 전환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서 있다.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 귀속 처리에 무관심하거나 종전대로의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많은 학회들은 이러한 태도를 지양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 귀속의 중요성을 정확히 인지하고 학술지 논문의 적절한 유통을 위한 질서 확립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학회는 국민의 학문연구와 문화발전을 위해 오픈 액세스 운동에 적극 앞장서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학회, 연구자, 도서관, 아카이빙기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긴밀하게 협조해야 할 것이다.

향후 학술지 논문의 유통은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의한 유료의 온라인 유통보다는 국가 리포지터리에 의한 무상의 자유이용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국가 리포지터리의 아카이빙에 의한 논문의 원스톱 통합검색을 온 국민이 무료로 향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

